

보도자료

[홈](#) > [알림마당](#) > [위원회 소식](#) > [보도자료](#)

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요강

담당부서: 은행제도과

등록자: 은행제도과

전화번호:

은행제도와 T:500-5355~6

1. 改正理由

· **자금사 인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**하고 업무범위 등 주요한 경영기준을 법령으로 규정

· **다중금사경영의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**

2. 改正内容

가. 법령의 투명성 제고

a:설립인가기준의 구체화¹한 제·조²:

○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인가기준 및 절차중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
진입기준의 투명성을 제고

· : 인·아심사기준, 주요출자자의 건전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전문인력과 물적시설의
구비여부 등

: : 인가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

가: 현재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^{한 제 조}:

: : 현재 부수업무^{여음관리계좌} & 0 \$ ^가 : &의 인수^{매매}

가: 현재 금감위가 정하고 있는 주식투자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^{한 제 조}:

: : 주식투자한도^{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} : ^{이내} 계열사는 : “ :

나. 경영지배구조의 개선

가: 『재벌개혁 후속조치방안^{부속 2}』에서 결정된 제^{금융권} 경영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종합금융회사에도 도입

A 사외이사제도의 도입^{한 제 조}:

○ 이사전체의 : ^이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

: : 종금차는 상법에 따라 : 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

B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^{한 제 조의}:

○ 구성^인 이상 : ^이를 사외이사로 선임

B 내부통제기준의 제정^{한 제 조의}:

○ 종금사로 하여금 임^{직원}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^{내부통제기준} 을 정하도록 의무화

Γ 소수주주권 강화^{한 제 조의}:

○ 주주대표소송^{주총소집권 회계장부열람권}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: ^{수준}으로 완화

: : 예^{대표소송권} 발행주식의 : ^{증권거래법} : “ :

다 재벌계열 금융기관간 교차지원행위 금지¹안 제1조의1²:

- 건전성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벌계열사 상호간에 담합 또는 계약으로 출자·대출 등을 교차지원하는 행위 금지

이전글 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

다음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